

정 부 조 달

정부조달채터 적용범위 [제17.2조 및 부속서 17-가]

- (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 한·미 FTA 정부조달 채터는 양허표에 명시된 각 당사국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정부 및 공기업은 정부조달 양허 대상에서 제외
 - 상품·서비스 조달 양허하한선(Threshold : 개방 하한금액)
 - 미국 : 10만불 (WTO 정부조달협정은 약 20만불)
 - 한국 : 1억원 (WTO 정부조달협정은 약 2억원)
 - 건설서비스(CPC Code 51) 조달 양허하한선
 - 500만 SDR
 - ※ 원화 환산액: 95억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22호, 적용 환율 : 1890.16원/SDR), 달러 환산액: 777.7만불 (미 연방조달규정 제25.402조, 2년마다 수정 공고)
 - ※ 미국측 양허하한선은 FAR 25.402에 반영
- (조달 수단에 민자사업 등 포함)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및 공공사업 실시협약(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적 수단에 의한 정부조달을 포함

- (적용 배제) 비계약적 합의 또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등은 한·미 FTA 정부조달 챕터 적용 배제

학교급식 예외조항 [부속서 17-가 제5절]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 조항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부속서 17-가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 ※ 개정 WTO GPA(2011.12.15 타결)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에도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WTO 정부조달협정 준용 (제17.3조)

- 계약대상가액산정(제2조), 입찰절차(제7조), 공급자자격심사(제8조) 등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조달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
-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 후에 정부조달 챕터 개정 가능
 - ※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 현행 제17.3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 협정의 적절한 규정으로 대체 필요

공급자의 과거실적 요구 금지 (제17.5조제2항)

- 공급자의 참가조건 충족 여부 평가시,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조달

참가 또는 계약에 낙찰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거실적(해당 조달기관과의 낙찰 사례 또는 당사국 내 사전 실적) 요구 금지

- WTO 개정 GPA(제8조제2항(c)호)는 입찰 참여시에만 과거 조달 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입찰 뿐만 아니라 낙찰시에도 과거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참고: 미측 국내법 관련 규정

○ 미측은 과거실적 요구 금지 관련 내용을 한미 FTA 정부조달 이행을 위한 USTR 공고 및 연방조달규정(77 FR 45)에 포함 (2012.3.2 및 2012.3.7 각각 공포)

- 미측의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의하면 입찰기업이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음(FAR 15.305 (a)(2)(iv))*

* In the case of an offeror without a record of relevant past performance or for whom information on past performance is not available, the offeror may not be evaluated favorably or unfavorably on past performance.

- 자국내 과거실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외국 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탈락사유를 설명 받을(FAR 15.506, debriefing) 수 있고, 불복청구절차(FAR 33, protest) 이용 가능
 - 불복청구는 발주기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등에 제기 가능

정부조달 작업반 설립 (제17.10조)

▣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립함.

- 상호합의 또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의 개최

- 정보기술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당사국이 제안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 검토
-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 교환

기타 사항

□ 전자적 수단의 사용 (제17.4조) 및 공고 (제17.6조)

-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시, 조달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다른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영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해야함.
- 각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 제9조(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 초청)에 따라 적절한 전자적 매체로 조달공고를 공표해야 함.

※ 우리 관련 사이트 : <http://www.g2b.go.kr>
미측 관련 사이트 : <http://www.fedbizopps.gov>

□ 기술규격의 입안·채택 및 적용 (제17.7조)

- 조달기관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는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근로조건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 기술 규격을 작성,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음.

□ 기 간 (제17.8조)

-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선택입찰방식인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조달공고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 단, 긴급사태가 조달기관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1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공고기간 단축이 가능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은 아래 일자로부터 4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공고 공표일
 - 선택입찰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될 것이라고 기관이 통지하는 일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① 주요 내용을 담은 계획된 조달이 WTO 정부조달협정 제9 조제7항에 따라 공표되었거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이거나, 조달기관이 긴급사태를 입증하는 경우, 1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단축 가능
 - ②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조달공고의 공표, △입찰 관련 모든 서류의 전자적 수단 이용, △입찰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접수에 대하여 각각 5일씩 단축 가능
 - ③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달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는 경우, 13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단축 가능
 - 입찰서도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1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단축 가능

참고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양허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금액		상품·서비스: 1억원 건설서비스: 500만SDR	상품·서비스: 10만불 건설서비스: 500만SDR
양허금액		상품·서비스: 1억원 건설서비스: 500만SDR	상품·서비스: 10만불 건설서비스: 500만SDR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 이상의 모든 물품	좌동
	용역	WTO 정부조달협정 한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건설 서비스	CPC 51 건설서비스	좌동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국가계약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